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방문판매법’)」 개정(’23.3.21. 개정)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의 후원방문판매업이 가능해지면서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기준을 재정비하고, 최근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의 개별재화 가격제한과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시 통지 의무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”를 “사업자등록증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등록증명

제28조제1항 단서 중 “기준의 변경이 다단계판매원 또는”을 “기준의 변경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, 다단계 판매원 또는”으로, “되거나”를 “되는 경우,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16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산정한다”를 “산정한다.(단,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 각목의 자가 개설·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은 제외하고 산정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“자료”를 “자료와 판매원별 산정자료”로 하며,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마. 라목에도 불구하고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

산정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) ① (생략)	제8조(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제1호 단서 또는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(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)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자등록증</u>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사업자등록증</u>	2. <u>사업자등록증명</u>
③ ~ ⑧ (생략)	③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8조(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)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,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하	제28조(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431